

투자신탁 설명서 변경 주요내용

1. 투자신탁의 명칭

개인용 신한 신증 MMF 제 1 호

개인용 신한 신증 MMF 제 2 호

2. 시행일 : 2007.3. 22

3. 약관 및 설명서 변경 주요 내용:

1) 개인용 MMF의 미래가격제 시행으로 아래와 같이 약관을 변경함에 따라 설명서에 반영함.

변경사항	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	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
제 20 조(수익증권의 판매가격)	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<신 설>	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 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 제 1항의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17 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
제 22 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	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1 조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는 수익자가 판매 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 당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	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 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1 조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부터 제 2 영업일(17 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시 제 3 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으로 한다. ②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 2 영업일(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 3 영업일)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
제 25조(수익증권의 환매제한)	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	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

	<p>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/p>	<p>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(17 시 경과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이 일정한 날의 전 영업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/p>
--	---	---

2) 판매사의 당일 환매에 대한 예외사항을 아래와 같이 반영

※ 수익증권의 환매시 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당일에 환매금액이 지급되는 예외적인 상황의 예(단, 관련 법령 및 판매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)

- 1) 주식 등의 매매와 연계하여 MMF계좌의 입출금이 예약된 경우
- 2) 유희자금을 MMF에 자동적으로 운용하는 계좌의 경우
- 3) 법 제63조 제2항, 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거하여 판매회사가 고유자금으로 MMF를 매입하는 경우 등

3) 운용역 변경- “개인용 신한 신종 MMF 제 1 호”에만 해당됨 : 안상훈 운용역 추가

<채권운용팀>

성명	주요경력
고준호	외환투신 채권운용/ 굿모닝투신운용 채권운용팀
금지원	교보투자신탁운용 채권운용팀/ KTB자산운용 채권운용팀
문혜경	신한증권 채권부
안상훈	KIS채권평가 선임연구원/ 외환투신 애널리스트
박재우	맵스자산운용 채권운용팀/ SK투신운용 채권운용팀

5.1 운용전문인력의 기타운용 현황

<채권운용팀>

성명	운용 구분	운용펀드수	운용자산(억원)
고준호	공동	56	17,731
금지원			
문혜경			
안상훈			
박재우			

- 채권형 26 개 및 혼합형 30 개이며, 종류형 투자신탁을 각각 헤아린 펀드 개수임.

(* 2007.2.28 기준)